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1

발의연월일 : 2026. 4. 7.
발 의 자 : 박윤옥, 이경숙, 김현택, 한송연, 전혜연, 이진환, 이수련, 원주영

1. 제안 이유

물관리 및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규정을 기후변화 및 도시환경 변화 등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물순환 촉진 시책 및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등 조례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물관리와 쾌적한 물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목적 및 기본개념 정비 규정(안 제1조 ~ 제4조)
나.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및 부문별 실천 계획 수립 등 규정(안 제5조 ~ 제7조)
다. 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규정(안 제8조 ~ 제11조)
라. 물순환 촉진 시책 추진 규정(안 제12조 ~ 제16조)
마. 물문화 육성 및 물관리 지원 및 보조금 지원 규정(안 제17조 ~ 제19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남양주시의 물순환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가뭄·홍수 등 재해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물관리”란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물을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및 사회·경제 활동의 필요요소이자 자원으로서 보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며, 가뭄·홍수로 인한 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일을 말한다.

3.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을 말한다.

4. “물순환 시설”이란 물순환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비점오염”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의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물질로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7. “빗물관리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 도로 및 그 밖에 불투수 지표면에 내린 빗물을 이수·치수·환경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는 시설로서 아래의 시설을 말한다.

   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빗물이용시설

   나. 강우 시 빗물이 지표면에 직접 유출됨에 따라 유발되는 도시침수 및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빗물을 가두어두거나 지하에 침투시키는 빗물저류·침투시설

8. “민간단체”란 수질보전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9. “물관리 부서”란 환경정책과, 생태하천과, 사업운영과, 수도과, 하수

처리과, 하천공원관리과, 시민안전관 등 물관리와 관련된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과는 물관리 및 물순환 업무를 총괄(이하 “총괄부서”라 한다)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환경보전과 재해방지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사회적·환경적 특성에 부합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물을 적정하게 이용하고,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련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와 시의 물순환 촉진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물순환 왜곡 등 원인자 책임원칙) 개발사업 등으로 불투수면이 증가하여 강우유출수 증가, 도시 물순환 왜곡 또는 물환경 악화를 초래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원인자 책임에 따라 강우유출수 저감과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해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물관리 및 물순환촉진 기본계획 등

제5조(물관리 및 물순환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10년마다 다

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물관리 및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물관리 및 물순환 촉진의 기본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물관리 여건 변화 및 전망

3.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4. 물이용, 물재해, 물환경 취약성 저감을 위한 부문별 물순환 촉진 시책

5. 물순환촉진법 제6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역 및 우선순위

6.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역별·유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현황, 중장기 불투수면적과 물순환 목표 설정 및 추진방향, 연차별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공공 및 민간개발 사업 등 시행주체별 빗물관리 분담 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7.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8. 물문화 육성 및 지역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9.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부문별 실천계획 수립 등) ① 물관리 부서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실천계획의 기본계획 부

합 여부를 확인하여,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천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문별 실천계획의 조정을 요청받은 물관리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남양주시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시장은 다른 조례에 따라 물순환촉진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3장 남양주시 물관리위원회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자문・조정・연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부문별 실천계획의 추진성과 및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물문화 육성, 물관리 지원 및 물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실장, 물관리 부서의 사무를 관장하는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물관리 및 물순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석 및 자료 제출의 요청은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물순환 촉진 시책의 추진

제12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안) ① 시장은 「물순환촉진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대상 지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수렴) ① 시장이 제14조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사전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제11조를 따른다.

제14조(관련 계획에 대한 조치) 시장은 「물순환촉진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구역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고시되는 경우 그 이후에 「물순환촉진법」 제8조제7항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을 수립(변경 및 재수립을 포함한다) 할 때 고시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비점오염 저감) 시장 및 개발사업자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저영향개발기법 설치 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제5장 물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

제17조(물문화 육성 및 물관리 지원) ① 시장은 물순환촉진 등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물문화 육성 및 물관리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국제협력,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산업의 기술개발 및 시장 개척 활동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전문기관, 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7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민간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물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선임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소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하천건강성 회복 실천위원회, 수돗물 평가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위원의 임기 종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붙 임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21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2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민간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 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3. 미 첨부 사유

- 조례안 제21조는 재정 수반에 관한 요인인 구체적 사업계획 등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환경국 환경정책과장 김정태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순환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물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순환을 말한다.

2.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나. 수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수질개선

다. 가뭄·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

라. 강수의 침투·저류 등 물순환 체계 정비

마. 하수 재이용, 중수도 설치 등 물의 순환이용

3. “물순환 시설”이란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다.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

마. 「지하수법」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바.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사.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아.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물순환 촉진구역”이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물순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물순환 촉진 시책·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5. “물순환 촉진사업”이란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등 이 법에서 정한 물순환 촉진 관련 시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7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수자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에 차질이 있거나 가뭄·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
3. 물순환 촉진사업의 공공필요와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균형적일 것
4.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다툼을 촉발시킬 우려가 없을 것
5. 물순환 촉진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변경을 공동으로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을 하려는 각각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변경 제안의 목적 및 필요성
2.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변경을 제안하려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추진하려는 물순환 촉진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변경 제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변경 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변경 제안과 관련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변경을 공동으로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을 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